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7. 7. 1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 5. 1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7. 5. 14.

다. 상정일자 : 제128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7.5.23)

상정, 심사, 보류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07.7.3)

상정, 심사, 수정가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유환열 교통지도과장)

가. 개정이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조치만 하던 것을 주차요금에 기본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하고 차량견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저공해차량 요금감면 및 차량이용제한장치 해제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에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4시간 초과 경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함 (안 제2조제2항)
- 2) 구청장이 미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가산금 및 해제 비용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차량운행제한 장치를 해제함 (안 제2조의2)
-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 관련 별표 1)

3. 검토보고의 요지(한두호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소재 각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체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통일함으로써 이용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저공해자동차를 주차요금 할인대상에 추가하여,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부정 주차한 차량을 발견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확대 적용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의 해제절차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대상에 저공해 자동차를 포함하였음.

-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부정주차 한 차량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견인대행업체에 의뢰하여 견인만 하던 것을 주차요금 부과 사실을 통보한 후 일정시간 경과되면 견인하는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즉시 견인으로 인한 민원은 해결할 수 있으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견인료에 주차요금과 가산금이 추가되어 구민 부담이 가중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토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해제 절차는 2006년 5월 4일 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맞춰 변경하였으며,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 및 환경부고시 제2005-61호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대상을 경형자동차에서 저공해자동차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7. 7. 11.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에 부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견인료에 주차요금과 가산금이 추가되어 구민 부담이 가중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토록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주차구획이 아닌 다른 구획에 주차하거나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것은 구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함(안 제2조 제2항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조치만 하던 것을 주차요금(기본요금+가산금)과 차량견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저공해차량 요금감면 및 차량이용제한장치 해제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4시간 초과 경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함 (안 제2조제2항)
- 나. 구청장이 미납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가산금 및 해제 비용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차량운행제한 장치를 해제함 (안 제2조의2)
- 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 관련 별표 1)

3. 개정근거

- 가. 「주차장법」 제9조3항(주차요금 및 가산금)
- 나. 맑은서울추진반-5520(2006.11.30)호와 관련 조례개정(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2007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기편성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7. 4. 12 ~ 5. 2)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7. 5. 10)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주차구획이 아닌 다른 구획에 주차하거나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2조의2제2항중 “관리책임이 있는자는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를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구청장은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해제를 요청하는”을 “해제하는”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해제비용 3만원 징수”를 “해제비용 3만원 징수(사전고지 후 해제)”로 한다.

제3조제8호중 “도로교통법시행령”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15조제4항 단서중 “주차장법”을 “법”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다.

별표1 비고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동표 비고의 제15호중 “스티커”를 “전자태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차장법</u> (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생략)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9. (생략) 10. <u>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u></p> <p>제2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p>	<p>제명 : <u>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u>주차장법</u>」 ----- ----- ----- ----- -----</p>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현행과 같음) ②----- ----- ----- ----- ----- -----</p> <p>1.~ 9. (현행과 같음) 10. <u>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주차구획이 아닌 다른 구획에 주차하거나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다.</u></p> <p>제2조의2(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 ----- ----- ----- ----- 관리책 임이 있는 자가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요청이 있으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p> <p>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u>해제비용 미징수</u>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u>해제비용 3만원 징수</u> <p>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7. (생략)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u>도로교통법시행령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u>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p>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u>각호의 1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및 2. (생략)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자. 4. (생략) <p>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u>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u>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④제2항-----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제하는----- ----- 2. -----해제비용 3만원 징수 (사전고지 후 해제) <p>제3조(주차거부금지)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7. (현행과 같음) 8. -----「<u>도로교통법시행령</u>」----- ----- <p>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 ----- -----<u>각호의 어느 하나</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및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4. (현행과 같음) <p>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u>도로교통법시행규칙</u>」 제8조----- ----- -----</p> <p>② (현행과 같음)</p>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 ③ (생략) ④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u>주차장법</u>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p> <p>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이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p>1. 및 2. (생략) 3. 토지가액은 <u>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u>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u>한국은행법</u>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p>	<p>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p> <p>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 ----- ----- -----</p> <p>1. 및 2. (현행과 같음) 3. ----- 「<u>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 ----- ----- ----- ----- ----- ----- ----- 「<u>한국은행법</u>」 ----- ----- -----</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 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로 감액한다.</p> <p>1. 및 2. (생략)</p> <p>3. 토지가액은 <u>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p> <p>4. (생략)</p> <p>[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 비 고 -</p> <p>1. ~ 7. (생략)</p> <p>8.구청장은 <u>자동차관리법</u>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u>경형자동차</u>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u>경형자동차</u>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9.~14. (생략)</p> <p>15.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스스로 쉬게 하는 시민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u>스티커</u>를 부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p>	<p>②----- ----- ----- ----- ----- ----- -----</p> <p>1. 및 2. (현행과 같음)</p> <p>3. ----- 「<u>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u>」 ----- ----- ----- -----</p> <p>4. (현행과 같음)</p> <p>[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표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 비 고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자동차관리법</u>」 ----- -----<u>경형자동차</u> 와 「<u>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u>」 <u>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u> <u>지공해자동차</u>----- ----- -----<u>경형자동차와</u> <u>지공해자동차</u>----- -----</p> <p>9.~14. (현행과 같음)</p> <p>15.----- ----- ----- ----- -----</p> <p><u>전자태그</u>----- ----- -----</p>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생략)</p> <p>②법 제9조제3항 -----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p> <p>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p> <p>2.~9.(생략)</p> <p>10.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주차장 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p>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현행과 같음)</p> <p>②법 제9조제3항 -----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p> <p>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p> <p>2.~9.(현행과 같음)</p> <p>10. 제5조3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주차구획이 아닌 다른 구획에 주차하거나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때에는 이미 4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다.</p>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개정안과 같음)</p> <p>②법 제9조제3항 ----- ----- ----- ----- ----- ----- ----- ----- ----- -----</p> <p>2.~9.(개정안과 같음)</p> <p>10.(<u>현행과 같음</u>)</p>